

요 약

미국 NAIC는 2021년에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음.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증진, 손실의 완화·관리, 위험의 모니터링·평가 등을 위해 설계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리베이트로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없을지(예컨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음

○ 미국 NAIC는 2021년에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음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는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Unfair Trade Practices Act, 이하, '모델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음
 - 보험약관에 대한 허위 설명 또는 허위 광고, 불공정한 차별, 허위 공시, 리베이트,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 미제공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은 금전적 제재, 인·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원래 모델법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리베이트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2021년에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음

○ 개정 모델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i) 건강 증진이나 손실 관리 등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ii) 일정 금액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하에서 건강 증진이나 손실 관리 등을 위한 부가가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제4조 H.(2)(e))
 - 물품이나 서비스는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면서 건강 증진, 손실의 완화·관리, 위험의 모니터링·평가, 재정 건전성의 증진, 위험에 대한 교육, 클레임 비용의 감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경우여야 함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특정 고객에게 위와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고객의 보험료 또는 해당 보험 종목의 보장 범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이어야 함

-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는 문서화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여야 함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위와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이를 무료로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마케팅이나 판매, 유지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천 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됨(제4조 H.(2)(f))
- 다만 이러한 선물, 물품, 서비스나 추천 행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고객은 그러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보험 가입, 유지, 갱신 등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여야 함
- 허용되는 금액의 한도로서 NAIC는 ‘보험료의 5% 또는 25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안하였음

○ NAIC는 리베이트 규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들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모델법을 개정한 것임

- 이번 모델법 개정은 NAIC 혁신 및 기술 TF(NAIC's Innovation and Technology Task Force)가 몇 년간 추진 해온 것으로서 ① 불공정거래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② 건강 증진, 위험 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들로부터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건강 증진, 위험 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로서는 인슈어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위험 감소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¹⁾
- 개정 모델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비보험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창의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예를 들어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운동 강습이나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 제공, 주택보험과 관련하여 주택 보안 시스템 제공,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차량 센서 제공이 있음)²⁾

○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8조)
-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특별이익 제공은 모집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1) Joseph Holahan, Jennifer Lee and Tony Roehl(2021. 5. 10), “NAIC Approves Changes To The Anti-Rebating Laws To Usher In A New Era Of Insurance Marketing”, Morris, Manning&Martin, LLP

2) Alexander Traum(2020. 12. 15), “NAIC Advances Amendment to Relax Restrictions on Rebates That May Be Offered by Insurance Providers”, Cooley Alert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규제의 역할일 것임

-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혜택 확대나 모집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이익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할 사항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예를 들면,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규제의 예외로서 법에 명시하는 방안, 보험 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³⁾ 모집과 관련된 이익 제공을 폭넓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이익 제공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1〉 NAIC 모델법상 리베이트 규제 완화 내용

내용
(e)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직원, 계열사 또는 제3자를 통한 경우 포함) 부가가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Value-added products or services)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안할 수 있음: 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는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Insurance coverage)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i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어야 함 ① 손실의 완화 또는 관리(Loss mitigation or loss control)의 제공 ② 클레임 비용 또는 클레임 해결 비용의 감소 ③ 책임 위험 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손실 위험에 대한 교육의 제공 ④ 위험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 위험 원인의 식별,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전략의 개발 ⑤ 건강의 증진(Enhance health) ⑥ 교육 또는 재정 계획 서비스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Financial wellness)의 증진 ⑦ 손실 후 서비스(Post-loss services)의 제공 ⑧ 고객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사망 또는 장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 변화에의 동기 부여 ⑨ 직원 또는 퇴직자 혜택 보험의 보장 범위 관리 지원 iii.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특정 고객에게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고객의 보험료 또는 해당 보험 종목의 보장 범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이어야 함 iv.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함 v. 각 주에서 이 조항을 구현함에 있어서 각 주의 보험감독관(Commissioner)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채택할 수 있음(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공시 및 불공정한 차별 관련 규제 등) v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는 문서화된 객관적 기준(Documented objective criteria)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제공되어야 함.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그러한 문서화된 기준을 보관해야 하며 보험감독당국(Department)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3) 현재 감독당국 행정지도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서의 건강관리기기 제공 등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업법상으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건강관리기기 외에도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음

〈표 1〉 계속

내용

- vii. 위 ii의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Good-faith belief)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파일럿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기간은 1년 이하일 것)의 일부로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이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파일럿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보험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감독당국이 통지 후 21일 이내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f)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됨:

- i. 보험감독관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의 마케팅, 판매, 구매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현금이 아닌 선물, 물품 또는 서비스(Non-cash gifts, items or services)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것(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객 대신 기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만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제공되는 경우여야 함. 또한 고객은 그러한 선물,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여야 함
- ii. 비용이 보험료 또는 제안된 보험료와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또한 해당 비용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청구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의 마케팅, 판매, 구매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기업 또는 기관고객(Commercial or institutional customer)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것(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객 대신 기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만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여야 함. 또한 고객은 그러한 선물,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여야 함
- iii. 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첨행사(Raffles or drawings)를 실시하는 것. 다만 참가 신청자에게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첨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보험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경품은 보험감독관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추첨행사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여야 함. 또한 그러한 추첨행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여야 함. 또한 고객은 그러한 선물,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여야 함

* 노트: 각 주에서 위 (f)에 대한 금전적 한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현재 또는 예상되는 보험료의 5% 또는 \$250 중 적은 금액을 적절한 한도로서 제안함. 한편 1974년 부동산 합의 절차법(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of 1974) 및 연방 작물 보험 공사 위험 관리 기관(The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Risk Management Agency)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금지 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또한 각 주에서는 기업 또는 기관고객에게 적용되는 한도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음